

가 등 록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가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청구권보전·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 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가등록·가처분명령 등(대물변제예약)
등록의 목적	본 품종보호권이전(보전)의 가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보전등록·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수수료 1만원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그 밖의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대물변제증명서)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